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부위원장님, 오금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진구 제3선거구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의원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3년 10월에 제정되어 2024년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기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제12조에서 인용하고 있던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제2항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개정안은 법령과 조례 간의 체계 정비와 정합성 확보에 중점을 둔 사항으로 향후 노인 일자리 관련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잘 살피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